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106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6. 30.

판결 선고 2015. 7. 16.

주 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415,455원 및 그 중 271,236,290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각 2014. 12. 31.까지, 피고 C는 2014. 11. 7.까지 각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327,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12.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2. 4. 30.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2. 6. 7. 신용보증원금 6억 3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6.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③ 2012. 6. 7. 신용보증원금 6,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6. 7.부터 2022. 6.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피고 A의 대표자), 피고 C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제2, 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2. 4. 30.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3. 4. 29.(그 후 보증기한이 2014. 4. 29.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6. 7.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 6억 300만 원, 보증기한 2020. 6. 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2012. 6. 14.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2. 6. 7.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 6,750만 원, 보증기한 2022. 6. 14.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2012. 6. 21.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3. 10. 15. 피고 A이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금상환채무, 합계 609,518,732원(=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272,190,920원(= 원금 2억 7,000만 원 + 이자 2,190,920원) +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303,314,285원(= 원금 3억 150만 원 + 이자 1,814,285원) + 제3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34,013,527원(= 원금 3,375만 원 + 이자 263,5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중 954,630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13원이고, 대지금급은 1,178,852원이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3. 12. 26.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 B 및 피고 D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3. 9. 27. 피고 D에게 계룡시 E에 있는 F아파트 제101동 제9층 제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D은 2013. 12. 16.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피고 B,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72,415,455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71,236,290원 + 확정손해금 313원 + 대지급금 1,178,85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1,236,29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13. 12. 26.부터 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공시)송달일인 2014. 12. 31.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11. 7.까지 각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37,327,812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03,314,285원 +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4,013,5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13. 12. 26.부터 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공시)송달일인 2014. 12.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피고 B의 처 H가 피고 D의 어머니인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 B의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D의 어머니인 피고 I이 2012. 7. 16.부터 2013. 4. 27.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B의 아내인 H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의 지급채권과 I의 H에 대한 대여금 중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정산)함으로써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 B는 H가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가 2013. 9.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남짓 이후인 2013. 10.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은 2013. 3. 무렵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뒤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곧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가) 피고 B의 무자력

살피건대, 피고 B는 2013. 9. 27.(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3억 6,500만 원 상당의 계룡시 J 지상 K아파트 제113동 제14층 제1402호, 합계 5억 1,500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6,500만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 B는 2013. 9. 27.(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소극재산으로 우리은행에 대하여 1,013,075,390원의 연대보증채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L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채무, 합계 1,123,075,390원(= 1,031,075,390원 +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의 어머니인 I이 피고 B의 처인 H에게 2012. 7. 16.에 2,000만 원, 2013. 2. 15.에 2,000만 원, 2013. 4. 27.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3. 9.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D와 사이에 I이 H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 중 4,000만 원 부분과 피고 B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채권 중 4,000만 원 부분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L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 D이 인수함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이 2013.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자인 피고 B가 수익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처인 H가 피고 D의 어머니인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중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변제하기로(즉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 B가 피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4,000만 원을 H에게 증여하고, H가 그 4,000만 원으로 I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와 법률효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피고 B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인 H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 B의 적극재산이 4,000만 원만큼 감소하는 반면, 소극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임이 명백하다.

한편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상 주된 채권·채무가 불가분채권·채무임에 비추어, 매매계약 중 일부가 사해성을 띄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수익자인 피고 D의 선의 여부

(1) 피고 D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피고 D은, 자신이 피고 A 소속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 B와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호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호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피고 A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② 피고 A은 약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인 점, ③ 피고 D의 어머니인 I이 피고 B의 아내인 H를 통하여 피고 B에게 피고 D의 취직을 부탁하여 피고 D이 피고 A에 근무하게 된 점, ④ M가 2013. 10. 7. 피고 A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을 때, 피고 D은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2013. 10. 31.까지 M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점, ⑤ 게다가 피고 D 자신도 2013. 8. 무렵부터 피고 A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⑥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A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 D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 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호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살피건대, 피고 D이 2013. 9. 2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G이 2013. 12. 16.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자인 피고 D으로부터 전득자인 G에게로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5,000만 원인 사실, 피고 B가 2012. 11. 14.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9.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L이 2012. 11. 29.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일자부 보증금반환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에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액 1억 1,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억 5,000만 원에서 L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 부분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분이고, 위 4,000만 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4,000만 원 부분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관

판사김민경

판사김재학

별지